

Human Rights



유엔인권해설집

아동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EM013029

Rights of the Child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아동의 권리

주(註)

이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제10권을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본 세계인권대회는 대단히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조기에 비준한 것을 환영하면서, 1995년까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의 모든 회원국들이 모든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그 밖의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배정함으로써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1편 2절)¹⁾

1) 1993년 6월 25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A/CONF.157/24(Part 1), chap. 111).

목차:

- I.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 사건
- II. 건설적 감시
- III. 아동인권의 구현

부록:

- 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I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 또는 승인한 회원국
- II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4조 1항 (a)문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최초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I.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위한 기념비적 사건

유엔총회는 1989년 11월 20일자 결의안 44/25를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²⁾

이는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 해, 폴란드 정부가 제출한 협약 초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제사회는 그 이전에도 아동의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었다. 국제연맹 (1924)과 유엔 (1959)이 모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고, 수많은 인권 및 인도주의법 조약들이 아동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성명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견해가 부상하게 된 것은 높은 유아사망률, 불충분한 의료보호, 기초적인 교육기회의 제한 등 아동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권리침해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매춘 또는 유해한 노동으로 학대 또는 착취당하는 아동들, 구금시설 또는 그 밖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동들, 그리고 난민과 무력분쟁의 피해자가 된 아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2) 협약 전문은 부록 I 참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한 실무그룹이 기초했다. 정부대표들이 실무그룹의 주축을 구성했으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세계노동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의 유엔기구들과 전문기구들, 그리고 수많은 비정부기구들이 토의에 참여했다. 폴란드 정부가 최초로 제출했던 초안은 오랜 논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폭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유엔총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서 다음 단계인 회원국들의 비준과 감시위원회의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채택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1990년 9월 현재, 20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협약이 발효되었다.

같은 달, 유엔아동기금과 6개국(캐나다, 이집트, 말리, 멕시코, 파키스탄, 스웨덴)의 주도로 뉴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1990년 말까지 57개국이 비준을 하고 협약의 회원국이 되었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는 1995년 말까지 모든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1995년 12월 31일까지 무려 185개국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숫자는 인권 분야에서 전례 없는 기록이다.³⁾

보편적이고 전향적인 원칙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국공통의 그리고 만민공통의 의미를 갖는다. 이 협약은 공통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모든 회원국이 모든 인간 공통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현실들을 고려한다.

협약은 네 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 원칙들은 협약의 전반적인 해석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가별 시행계획에 지침이 된다. 이 네 개의 일반원칙들은 협약 2, 3, 6, 12조에 공식화되어 있다.

. 차별금지 (2조): 회원국들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아동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의, 아동의 부모의,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이다. 여아들은 남아들과 동일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난민아동, 외국계 아동, 선주민 또는 소수집단 아동들은 다른 모든 아동들과 동일한 권리

3) 1996년 10월 15일 현재 회원국 목록을 보려면 부록 II 참조.

를 갖는다. 장애아동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 **아동의 최선의 권익 (3조):** 국가기관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원칙은 법원, 행정기관, 입법기관, 공영 및 민영 사회복지기관들의 결정에 모두 적용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원칙은 본 협약이 표방하는 기본 정신이며, 이의 실행이 중대한 과제이다.

.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6조):** 생명권에 관한 조항에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할 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발달”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여 질적인 측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아동의 의견 (12조):**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

- 모든 아동은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 관계기관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 모든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돕기 위해서 자국의 영토 안으로의, 또는 영토 밖으로의 여행을 허가해야 한다.

- 아동의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는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는 아동을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포함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및 방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국가는 부모 없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대안적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 입양절차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양부모가 아동을 출생국 밖으로 이주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당사국들은 적용할 보호규정과 법률적 요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장애아동은 특수한 치료, 교육, 그리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아동들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예방적 조치, 보건교육, 그리고 유아사망률을 낮추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초등교육은 무료이며 의무교육이어야 한다. 학교의 훈육은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이 이해와 평화, 그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휴식과 놀이를 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문화적 및 예술적 활동을 할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 국가는 아동들을 경제적 착취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건강 또는 안녕을 해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국가는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과 약물의 생산 또는 밀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 아동의 납치 또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 구금 중인 아동들은 성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아동들은 고문 및 잔혹한 또는 굴욕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15세 미만의 아동은 무력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무력분쟁에 노출된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 소수집단 및 선주민 아동은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 학대, 방치, 또는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게는 회복과 재활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 형사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증진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처우해야 한다.
- 국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성인과 아동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II. 건설적 감시

많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소수자 차별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와 그 산하에 설치되어 그 업무가 아동에 대한 착취와 학대문제를 포함하는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아동의 권리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유권규약위원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고문방지위원회

이들 5개 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조약기구들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정한 유엔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해당 조약을 비준하거나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의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협약의 43조에 의거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은 이들 기구들의 활동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

1991년 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의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가 협약의 감시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의 첫 번째 선출을 실시하기 위해 열렸다. 10석을 놓고 40여명의 후보가 지명되었다. 이 첫 선거에서 선출된 전문가들은 바베이도스(Barbados),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구소련, 스웨덴, 짐바브웨 출신이었다. 6명은 여성이었고, 4명이 남성이었다. 이들은 인권 및 국제법, 소년사법, 사회복지, 의학, 언론, 정부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현재 1년에 3차례의 회기를 갖고 있으며, 각 회기는 4주간이다. 마지막 주는 항상 다음 회기의 준비에 배정된다. 위원회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터의 지원을 받는다.

협약 4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자국의 영토 내에서 아동의 권리보호의 진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승인한다. 최초의 이행보고서는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처음으로 제출되는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한은 1992년 9월이었다. 1995년 12월까지 70여 회원국의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1991년 10월 최초의 회기에서, 위원회는 최초 보고서의 작성과 구성을 돕기 위한 지침을 채택했다.⁴⁾ 회원국들이 이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지침은 보고서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회원국이 부딪혔던 “요인들과 장애들”을 지적할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보고서를 문제중심적이고 자기비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행 우선순위”와 “미래의 구체적 목표들”을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와 함께 관련 법조문과 통계자료도 제출되어야 한다.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정부 대표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관련 유엔기구 및 전문기구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하는 그 밖의 관련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운영절차

위원회의 실무그룹은 매 회기 시작 전에 회원국들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들을 예비심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대표들과 위원회의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회원국 보고서뿐만 아니라 실무그룹은 다른 인권조약기구들이 제공한 정보들을 검토한다. 또, 특정국가들 또는 주제별 사안들에 관한 인권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고문 특별보고관, 초법적·독단적·약식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한 기구들로부터도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부문에서의 핵심적 파트너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다.

일반 토의 및 연구

1993년 1월 위원회는 유엔총회에게 무력분쟁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 자체로 일종의 절차적 혁신이었다. 이는 1992년 위원회가 주최하고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이 주제에 관한 “일반 토의”의 결과였다.

그 이후, 아동의 경제적 착취, 가정에서의 아동의 권리, 여아의 권리, 소년사법에 관한 일반 토의가 열렸다. 이러한 주제별 토의는 1년에 한번 정도 열리고 있으며, 연구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지만, 협약 조문의 해석에 관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4) 부록 III 참조.

유엔 기구들과 전문기구들은 실무그룹의 토의에 참가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비정부기구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정보를 근거로 국가보고서에 관한 준비회의에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국가보고서에 관한 실무그룹의 회기전 토의의 최종결과는 “현안목록”(list of issues)으로 나타난다. 이 목록은 위원회가 우선적 안건으로 채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현안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차기 총회에서 자국의 보고서가 심의될 당사국 정부에 총회 회기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과 함께 전달된다. 당사국 정부는 회기 전에 현안들에 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당사국 정부에게 위원회와의 토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의 도중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결정권이 부족한 대표보다는 장관 또는 차관 등의 고위급 관리들과 토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회원국들과의 토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며, 결과와 과정을 모두 다룬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토의에 참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인의 위원들이 “보고관”으로서 한 국가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심사를 마치며 위원회는 “최종평가서(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이는 국가 보고서 심의에 관한 위원회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평가서는 회원국 내에서 널리 공개되고, 협약 조항들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평가서는 핵심적인 문서이며, 각국 정부들은 이 문서가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이 요망된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사록이 기록된다. 유엔은 토의에 관한 보도자료와 보다 상세한 의사진행절차의 요약기록을 출간한다. 위원회는 국가별 국가 보고서, 회의 요약기록 및 최종평가서를 합본으로 출간할 것을 권고한다. 자국의 보고서가 이미 토의된 국가들 중 일부가 그 권고를 따랐다.

회원국 보고서의 토의 과정은 대중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토의는 보통 일반에게 공개된다. 회기 전에 실시되는 실무그룹의 준비토론과 위원회의 최종평가서 작성과정만 비공개로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국가보고절차도 공개되고 투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권장한다.

보고절차는 건설적이고 국제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 목적은 문제점들을 정의하고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세계노동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등 유엔의 전문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 절차

협약에는 아동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개별적 진정들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4조 4항).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들에게 이러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III. 아동인권의 구현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들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의 보고지침을 기초할 때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구현할 구체적인 이행 조치들에 중점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협약의 정신과 절차에 의거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협약 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해서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행의 첫 단계는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을 검토하고, 법률이 협약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식 또는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아동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며,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움부즈만을 포함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제도들이 국가차원 그리고 지방정부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정치적 결정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관련 정부기구들, 그리고 의회와 지방 의회들이 아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가? 아동 자신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아동의 상황에 관한 신빙성 있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정확한 자료가 있을 때 보다 적절하고 중점적인 구제조치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통계기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협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권리들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그 밖의 방법으로는, 유아보육시설의 교사 및 기타시설의 교사들, 아동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 경찰 및 기타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을 보호하는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들 수 있다. 협약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지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협약 이행의 훌륭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협약 42조는 회원국들은 이 같은 정보를 아동과 성인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배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는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44조 6항)

국가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이행해야 한다(4조)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동권리협약이 예산적 제약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협약은 일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개혁은 하루 밤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의료(24조)와 교육(28조)에 대한 권리는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언제나 당사국이 스스로의 의무를 책임져야 하지만, 국제사회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부자 나라이건 가난한 나라이건, 국가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며, 아동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협약의 정신이다.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부국들은 자신들의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을 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 개도국들도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자문 서비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는 효과적인 아동의 권리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45(b)조는 전문적 조언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또는 그러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회원국들의 모든 보고서들을, 위원회의 소견과 제

안과 함께, 관련 기관과 기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보고서 심사결과인 회원국들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기술적 협력을 권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책무의 하나로 삼고 있는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은 이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에게 위원회의 권고에 호의적으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록 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⁵⁾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5)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결의안 44/25에 의해 채택, 49조에 의거하여 1990년 9월 2일 발효.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

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c)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

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서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c)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d)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

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 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 져야 한다.

-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b)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d)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e)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 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능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

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

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i)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ii)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iii)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v)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vi)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vii)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a)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b)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당사국의 법; (b)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b)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

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

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부록 II

아동권리협약 비준국

국가	서명일자	비준일자	발효일자
아프가니스탄	1990. 9. 27	1994. 3. 28	1994. 4. 17
알바니아	1990. 1. 26	1992. 2. 27	1992. 3. 28
알제리	1990. 1. 26	1993. 4. 16	1993. 5. 16
안도라	1995. 10. 2	1996. 1. 2	1996. 2. 1
앙골라	1990. 2. 14	1990. 12. 5	1991. 1. 4
안티구아 바부다	1991. 3. 12	1993. 10. 5	1993. 11. 4
아르헨티나	1990. 6. 29	1990. 12. 4	1991. 1. 3
아르메니아		1993. 6. 23 ^a	1993. 7. 22
오스트레일리아	1990. 8. 22	1990. 12. 17	1991. 1. 16
오스트리아	1990. 1. 26	1992. 8. 6	1992. 9. 5
아제르바이잔		1992. 8. 13 ^a	1992. 9. 12
바하마	1990. 10. 30	1991. 2. 20	1991. 3. 22
바레인		1992. 2. 13 ^a	1992. 3. 14
방글라데시	1990. 1. 26	1990. 8. 3	1990. 9. 2
바베이도스	1990. 4. 19	1990. 10. 9	1990. 11. 8
벨라루스 공화국	1990. 1. 26	1990. 10. 1	1990. 10. 31
벨기에	1990. 1. 26	1991. 12. 16	1992. 1. 15
벨리즈	1990. 3. 2	1990. 5. 2	1990. 9. 2
베냉	1990. 4. 25	1990. 8. 3	1990. 9. 2
부탄	1990. 6. 4	1990. 8. 1	1990. 9. 2
볼리비아	1990. 3. 8	1990. 6. 26	1990. 9.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2. 3. 6
보츠와나		1995. 3. 14 ^a	1995. 4. 13
브라질	1990. 1. 26	1990. 9. 24	1990. 10. 24
브루나이		1995. 12. 27 ^a	1996. 1. 26
불가리아	1990. 5. 31	1991. 6. 3	1991. 7. 3
부르키나파소	1990. 1. 26	1990. 8. 31	1990. 9. 30
부룬디	1990. 5. 8	1990. 10. 19	1990. 11. 18
캄보디아	1992. 9. 22	1992. 10. 15	1992. 11. 14
카메룬	1990. 9. 25	1993. 1. 11	1993. 2. 10
캐나다	1990. 5. 28	1991. 12. 13	1992. 1. 12
카보베르데		1992. 6. 4 ^a	1992. 7.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90. 7. 30	1992. 4. 23	1992. 5. 23

차드	1990. 9. 30	1992. 10. 2	1990. 11. 1
칠레	1990. 1. 26	1990. 8. 13	1990. 9. 12
중국	1990. 8. 29	1992. 3. 2	1992. 4. 1
콜롬비아	1990. 1. 26	1991. 1. 28	1991. 2. 27
코모로스	1990. 9. 30	1993. 6. 22	1993. 6. 21
콩고		1993. 10. 14 ^a	1993. 11. 13
룩셈부르크			1997. 7. 6
코스타리카	1990. 1. 26	1990. 8. 21	1990. 9. 20
코트디부아르	1990. 1. 26	1991. 2. 4	1991. 3. 6
크로아티아*			1991. 10. 8
쿠바	1990. 1. 26	1991. 8. 21	1991. 9. 20
키프로스	1990. 10. 5	1991. 2. 7	1991. 3. 9
체코*			1993. 1. 1
북한	1990. 8. 23	1990. 9. 21	1990. 10. 21
덴마크	1990. 1. 26	1991. 7. 19	1991. 8. 18
도미니카공화국	1990. 8. 8	1991. 6. 11	1991. 7. 11
에콰도르	1990. 1. 26	1990. 3. 23	1990. 9. 2
이집트	1990. 2. 5	1990. 7. 6	1990. 9. 2
엘살바도르	1990. 1. 26	1990. 7. 10	1990. 9. 2
적도기니		1992. 6. 15 ^a	1992. 7. 15
에리트레아	1993. 12. 20	1994. 8. 3	1994. 9. 2
에스토니아		1991. 10. 21 ^a	1991. 11. 20
에티오피아		1991. 5. 14 ^a	1991. 6. 13
피지	1993. 7. 2	1993. 8. 13	1993. 9. 12
핀란드	1990. 1. 26	1991. 6. 20	1991. 7. 20
프랑스	1990. 1. 26	1990. 8. 7	1990. 9. 6
가봉	1990. 1. 26	1994. 2. 9	1994. 3. 11
감비아	1990. 2. 5	1990. 8. 8	1990. 9. 7
그루지야		1994. 6. 2 ^a	1994. 7. 2
독일	1990. 1. 26	1992. 3. 6	1992. 4. 5
가나	1990. 1. 29	1990. 2. 5	1990. 9. 2
그리스	1990. 1. 26	1993. 5. 11	1993. 6. 10
그레나다	1990. 2. 21	1990. 11. 5	1990. 12. 5
과테말라	1990. 1. 26	1990. 6. 6	1990. 9. 2
기니		1990. 7. 13 ^a	1990. 9. 2
기니비사우	1990. 1. 26	1990. 8. 20	1990. 9. 19
가이아나	1990. 9. 30	1991. 1. 14	1991. 2. 13
아이티	1990. 1. 20	1995. 6. 8	1991. 7. 8
교황청	1990. 4. 20	1990. 4. 20	1990. 9. 2
온두라스	1990. 5. 31	1990. 8. 10	1990. 9. 9

헝가리	1990. 3. 14	1991. 10. 7	1991. 11. 6
아이슬란드	1990. 1. 26	1992. 10. 28	1992. 11. 27
인도		1992. 12. 11 ^a	1993. 1. 11
인도네시아	1990. 1. 26	1990. 9. 5	1990. 10. 5
이란	1991. 9. 5	1994. 7. 13	1994. 8. 12
이라크		1994. 6. 15 ^a	1994. 7. 15
이스라엘	1990. 7. 3	1991. 10. 3	1991. 11. 2
이탈리아	1990. 1. 26	1991. 9. 5	1991. 10. 5
자메이카	1990. 1. 26	1991. 5. 14	1991. 6. 13
일본	1990. 9. 21	1994. 4. 22	1994. 5. 22
요르단	1990. 8. 29	1991. 5. 24	1991. 6. 23
카자흐스탄	1994. 2. 16	1994. 8. 12	1994. 9. 11
케냐	1990. 1. 26	1990. 7. 30	1990. 9. 2
키리바시		1995. 12. 11 ^a	1996. 1. 10
쿠웨이트	1990. 6. 7	1991. 10. 21	1991. 11. 20
키르기즈스탄		1994. 10. 7 ^a	1994. 11. 6
라오스		1991. 5. 8 ^a	1991. 6. 7
라트비아		1992. 4. 14 ^a	1992. 5. 14
레바논	1990. 1. 26	1991. 5. 14	1991. 6. 13
레소토	1990. 8. 21	1992. 3. 10	1992. 4. 9
라이베리아	1990. 4. 26	1993. 6. 4	1993. 7. 4
리비아		1993. 4. 15 ^a	1993. 5. 15
리히텐슈타인	1990. 9. 30	1995. 12. 22	1996. 1. 21
리투아니아		1992. 1. 31 ^a	1992. 3. 1
룩셈부르크	1990. 3. 21	1994. 3. 7	1994. 4. 6
마다가스카르	1990. 4. 19	1991. 3. 19	1991. 4. 18
말라위		1991. 1. 2 ^a	1991. 2. 1
말레이시아		1995. 2. 17 ^a	1995. 3. 19
몰디브	1990. 8. 21	1995. 2. 11	1991. 3. 13
말리	1990. 1. 26	1990. 9. 20	1990. 10. 20
몰타	1990. 1. 26	1990. 9. 30	1990. 10. 30
마셜군도	1993. 4. 14	1993. 10. 4	1993. 11. 3
모리타니	1990. 1. 26	1991. 5. 16	1991. 6. 15
모리셔스		1990. 7. 26 ^a	1990. 9. 2
멕시코	1990. 1. 26	1990. 9. 21	1990. 10. 21
마이크로네시아		1993. 5. 5 ^a	1993. 6. 4
모나코		1993. 6. 21 ^a	1993. 7. 21
몽골	1990. 1. 26	1990. 7. 5	1990. 9. 2
모로코	1990. 1. 26	1993. 6. 21	1993. 7. 21
모잠비크	1990. 9. 30	1994. 4. 26	1994. 5. 26

미얀마		1991. 7. 15 ^a	1991. 8. 14
나미비아	1990. 9. 26	1990. 9. 30	1990. 10. 30
나우루		1994. 7. 27 ^a	1994. 8. 26
네팔	1990. 1. 26	1990. 9. 14	1990. 10. 14
네덜란드	1990. 1. 26	1995. 2. 6	1995. 3. 7
뉴질랜드	1990. 10. 1	1993. 4. 6	1993. 5. 6
니카라과	1990. 2. 6	1990. 10. 5	1990. 11. 4
니제르	1990. 1. 26	1990. 9. 30	1990. 10. 30
나이제리아	1990. 1. 26	1991. 4. 19	1991. 5. 19
니우에		1995. 12. 20 ^a	1996. 1. 19
노르웨이	1990. 1. 26	1991. 1. 8	1991. 2. 7
오만		1997. 1. 8	
파키스탄	1990. 9. 20	1990. 11. 12	1990. 12. 12
팔라우		1995. 8. 4 ^a	1995. 9. 3
파나마	1990. 1. 26	1990. 12. 12	1991. 1. 11
파푸아뉴기니	1990. 9. 30	1993. 3. 1	1993. 3. 31
파라과이	1990. 4. 4	1990. 9. 25	1990. 10. 25
페루	1990. 1. 26	1990. 9. 4	1990. 10. 4
필리핀	1990. 1. 26	1990. 8. 21	1990. 9. 20
폴란드	1990. 1. 26	1991. 6. 7	1991. 7. 7
포르투갈	1990. 1. 26	1990. 9. 21	1990. 10. 21
카타르	1992. 12. 8	1995. 4. 3	1995. 5. 3
한국	1990. 9. 25	1991. 11. 20	1991. 12. 20
몰도바		1993. 1. 26 ^a	1993. 2. 25
루마니아	1990. 1. 26	1990. 9. 28	1990. 10. 28
러시아	1990. 1. 26	1990. 8. 16	1990. 9. 15
르완다	1990. 1. 26	1991. 1. 24	1991. 2. 23
세인트 킷츠 네비스	1990. 1. 26	1990. 7. 24	1990. 9. 2
세인트루시아		1993. 6. 16 ^a	1993. 7. 1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93. 9. 20	1993. 10. 26	1993. 11. 25
사모아	1990. 9. 30	1994. 11. 29	1994. 12. 29
산마리노		1991. 11. 25 ^a	1991. 12. 25
상투메프린시페		1991. 5. 14 ^a	1991. 6. 13
사우디아라비아		1996. 1. 26	1996. 2. 25
세네갈	1990. 1. 26	1990. 7. 31	1990. 9. 2
세이셸		1990. 9. 7 ^a	1990. 10. 7
시에라리온	1990. 2. 13	1990. 6. 18	1990. 9. 2
싱가포르		1995. 10. 5 ^a	1995. 11. 4
슬로바키아*			1993. 1. 1
슬로베니아*			1991. 6. 25

솔로몬군도		1995. 4. 10 ^a	1995. 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993. 1. 29	1995. 6. 16	1995. 7. 16
스페인	1990. 1. 26	1990. 12. 6	1991. 1. 5
스리랑카	1990. 1. 26	1991. 7. 12	1991. 8. 11
수단	1990. 7. 24	1990. 8. 3	1990. 9. 2
수리남	1990. 1. 26	1993. 3. 1	1993. 3. 31
스와질랜드	1990. 8. 22	1995. 9. 7	1995. 10. 6
스웨덴	1990. 1. 26	1990. 6. 29	1990. 9. 2
스위스		1997. 3. 26	
시리아	1990. 9. 18	1993. 7. 15	1993. 8. 14
타지키스탄		1993. 10. 26 ^a	1993. 11. 25
태국		1992. 3. 27 ^a	1992. 4. 26
마케도니아			1991. 9. 17
토고	1990. 1. 26	1990. 8. 1	1990. 9. 2
통가		1995. 11. 6 ^a	1995. 12. 6
트리니다드토바고	1990. 9. 30	1991. 12. 5	1992. 1. 4
튀니지	1990. 2. 26	1992. 1. 30	1992. 2. 29
터키	1990. 9. 14	1995. 4. 4	1995. 5. 4
투르크메니스탄		1993. 9. 20 ^a	1993. 10. 19
투발루		1995. 9. 22 ^a	1995. 10. 22
우간다	1990. 8. 17	1990. 8. 17	1990. 9. 16
우크라이나	1991. 2. 21	1991. 8. 28	1991. 9. 27
아랍에미리트		1997. 2. 2	
영국	1990. 4. 19	1991. 12. 16	1992. 1. 15
탄자니아	1990. 6. 1	1991. 6. 10	1991. 7. 10
우루과이	1990. 1. 26	1990. 11. 20	1990. 12. 20
우즈베키스탄		1994. 6. 29 ^a	1994. 7. 29
바누아투	1990. 9. 30	1993. 7. 7	1993. 8. 6
베네수엘라	1990. 1. 26	1990. 9. 13	1990. 10. 13
베트남	1990. 1. 26	1990. 2. 28	1990. 9. 2
예멘	1990. 2. 13	1991. 5. 1	1991. 5. 31
유고슬라비아*	1990. 1. 26	1991. 1. 3	1991. 2. 2
자이르	1990. 3. 20	1990. 9. 27	1990. 10. 27
잠비아	1990. 9. 30	1991. 12. 5	1992. 1. 5
짐바브웨	1990. 3. 8	1990. 9. 11	1990. 10. 11

^a 가입(accession)

* 승계

부록 III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44조 1항 (a)문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최초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⁶⁾

서문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4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a)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b) 그 후 5년마다”

2. 협약의 44조는 2항에서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협약에 의거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장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요소들과 장애들을 설명해야 하며, 위원회가 당사국 내에서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회원국들에게는 국내법 및 정책을 협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들의 보호에 관한 발전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믿고 있다.

4. 위원회는 보고 과정이 협약이 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회원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회원국들과 위원회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5. 여러 국제인권조약 산하 감시기구들과 관련되는 회원국 보고서의 일반적 사항들은 document HRI/1991/1에 규정에 따라 “회원국 보고서 서문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가입 후 최초로 제출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6) 1991년 10월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최초 회기에서 채택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orty-seventh Session, Supplement No. 41 (A/47/41)*, 부록 III 참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아동권리위원회가 1991년 10월 15일 개최된 22차 회의에서 채택한 현재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6. 위원회는 협약 44조 1항 (b)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려고 한다.

7. 보고서에는 상세한 통계자료 및 지표들과 함께 관계법령 및 그 밖의 문서들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위원회 위원들이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번역하거나, 복사하여 일반에 배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가 보고서 자체에서 실제 언급되지 않았거나, 부록으로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들을 참고하지 않고도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들을 보고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협약의 조항들은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들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다.

I. 이행을 위한 일반적 조치들

9. 본 장의 협약 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국내법과 정책을 협약의 조항들과 조화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들.

(b) 아동관련정책들을 조정하고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가차원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존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조치들.

10. 또, 협약 4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취한 또는 취할 예정인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11. 협약 44조 6항에 의거해서, 회원국들은 자국 내 일반 대중들이 자국이 제출하는 보고

서를 볼 수 있도록 취한 조치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조치들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II. 아동의 정의

12. 본 장의 협약 1조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국내법령상의 아동의 정의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인자격을 취득하는 연령과 다음과 같은 목적별 법적최저연령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동의 없는 법률적 또는 의학적 상담, 의무교육의 종료, 비상근고용, 상근고용, 위험한 고용, 성행위 동의, 혼인, 자원입대, 징병, 법정에서의 자발적 증언, 형사책임, 자유의 박탈, 수감, 알코올 및 기타 규제 받는 약물에 관한 연령 등이 있다.

III. 일반원칙

13. 협약 조항들의 이행을 위해서 이미 취한 또는 계획 중인 주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 이행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과 애로 사항들, 진전 상황, 이행의 우선순위 및 향후의 구체적인 목표 등 다음과 같은 현안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차별금지 (2조)

(b) 아동의 최선의 권익 (3조)

(c)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6조)

(d) 아동의 의견 존중 (12조)

14. 또, 본 지침의 다른 곳에 수록된 조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시민적 권리 및 자유

15. 본 장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협약의 조항들의 이행을 위해서 이미 취한 또는 계획 중인 주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 이행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과 애로 사항들, 진전 상황, 그리고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이행의 우선순위 및 향후의 구체적인 목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이름과 국적 (7조)

(b) 신분의 보전 (8조)

(c) 표현의 자유 (13조)

- (d)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 (17조)
- (e)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14조)
- (f)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15조)
- (g) 사생활 보호 (16조)
- (h)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37(a)조)

V.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16. 회원국들은 협약의 조항들의 이행을 위해서 이미 취한 또는 계획 중인 주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 특히, “아동의 권익”과 “아동의 의견 존중”의 원칙들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 및 애로 사항들, 진전 상황, 그리고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이행의 우선순위 및 향후의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부모의 지도
- (b) 부모의 책임 (18조, 1항 및 2항)
- (c) 부모로부터의 분리 (9조)
- (d) 가족의 재결합 (10조)
- (e) 아동양육비의 회부 (27조 4항)
- (f)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20조)
- (g) 입양 (21조)
- (h) 불법이송 및 미귀환 (11조)
- (i) 학대 및 유기 (19조),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에의 복귀 (39조) 포함
- (j) 정기적인 양육지정 심사 (25조)

17. 또, 회원국들이 보고기간 내의 연간 집단별 아동의 숫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령별, 성별, 종족적 또는 민족적 배경별, 시골 또는 도시환경별 숫자와 무의탁아동, 학대 받는 또는 방치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 가정위탁아동,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동, 국내입양, 외국으로부터의 입양, 국외입양 등의 숫자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18. 회원국들은 본 장에서 언급한 아동들과 관련된 추가적 통계정보와 지표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기본적 건강과 복지

19. 본 장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협약의 조항들의 이행을 위해서 시행 중인 주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 이 분야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특히 감시 정책과 기구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 및 애로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생존과 발달 (6조 2항)

(b) 장애아동 (23조)

(c) 건강과 보건의료 (24조)

(d) 사회보장 및 보육 서비스 및 시설 (26조와 18조 3항)

(e) 생활수준 (27조 1-3항)

20. 이 지침의 9항 (b)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이러한 협약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구들을 비롯한 정부 또는 비정부성격의 지방 및 국가적 기구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즉 협력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본 장에서 언급한 아동에 관한 통계정보와 지표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21. 본 장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협약의 조항들의 이행을 위해서 시행 중인 주요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 이 분야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특히 감시 정책과 기구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과 애로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교육, 직업 훈련 및 지도 포함 (28조)

(b) 교육의 목적 (29조)

(c) 여가,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적 활동 (31조)

22. 회원국들은 이 지침의 9(b)항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약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구들을 비롯한 정부 또는 비정부성격의 지방 및 국가적

기구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즉 협력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회원국들이 본 장에서 언급한 아동에 관한 통계 정보와 지표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I. 특별 보호조치

23. 본 장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은 협약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들,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과 애로 사항들, 진전 상황, 그리고 다음 사항에 있어서 이행의 우선순위 및 향후의 구체적인 목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긴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

(i) 난민아동 (22조)

(ii) 무력분쟁에 처한 아동 (38조),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에의 복귀 포함 (39조)

(b) 사법집행의 대상이 된 아동

(i) 소년사범의 집행 (40조)

(ii)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모든 형태의 구금, 징역, 또는 구류상황에의 수용 포함 (37조 (b), (c), (d))

(iii) 청소년에 대한 형의 선고, 특히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 (37조 (a))

(iv)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에의 복귀 (39조)

(c)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에의 복귀 포함 (39조)

(i) 경제적 착취, 아동노동 포함 (32조)

(ii) 약물남용 (33조)

(iii)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34조)

(iv) 기타 형태의 착취 (36조)

(v) 아동의 거래, 인신매매, 납치 (35조)

(d)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에 속하는 아동 (30조)

24.또, 회원국들이 23항에서 언급한 아동에 관한 통계정보와 지표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